

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6. 5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6. 5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6. 15

(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감사실장 황해룡)

가. 제안사유

「지방재정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(2006. 1. 1시행)됨에 따라,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투융자심사위원회,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투·융자심사위원회,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·운영(안 제1조)
-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한 재정투·융자심사,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한 재정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,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2조)
-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 추가(안 제6조제3항)
- 현행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」에서 규정한 공시내용, 시기, 매체 등 공시방법 등이 지방재정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함(안 부칙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입법예고 : 2006. 4. 25 ~ 5. 15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투·융자심사위원회,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없애고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며,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운용상황 공시내용,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
-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 방법 등의 사항을 추가하며
- 또한, 현행 「사하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」에서 규정한 공시내용, 시기, 공시방법 등이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

5. 결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